

한·미 FTA 이행법 제102조 및 관련 SAA 조항(비공식 번역)

한·미 FTA 이행법	행정조치계획(SAA)
<p>제102조 협정의 미국법 및 주법과의 관계</p> <p>(a) 협정의 미국법과의 관계</p> <p>(1) 상충시 미국법이 우선 - 미국법과 합치하지 않는 협정의 어떠한 규정이나 어떠한 인 또는 상황에 대한 그러한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p> <p>(2) 해석 -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p> <p>(A) 미국법을 개정 또는 수정하거나,</p> <p>(B) 미국법에 따라 부여된 어떠한 권한도 제한하는 것으로,</p> <p>해석되지 아니한다.</p>	<p>법안 제102조(a)항은 협정과 미국법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행법안은, 연방 정부기관에게 부여된 이행 규정 공포 권한을 포함하여, 미국법을 협정상 미국의 의무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고,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타 변경을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행법안은 협정문과 합치하지 않는 기존 연방 법령을 개정하고,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존 연방법을 개정하며, 어떤 경우에는 법에 완전히 새로운 조항을 창설하는 방식을 통해 연방법에 대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p> <p>법안 제102조(a)항은 이행법안에 의해 입법되거나 개정된 연방법 조항을 포함해서 연방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02조(a)항은 연방법의 조건에 따라 허용가능한 경우 한·미 FTA와 합치하도록 연방법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조항은 연방법을 한·미 FTA에 따라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연방법상 필요한 변경은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시각을 반영한다.</p> <p>미 행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미국의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모든 법을 이행법에 포함하고 또한 모든 행정조치를 본 행정조치계획에서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이는 이행법 자체에서의 법률 변경에서 비롯되는 규정과 더불어 근간이 되는 미국법의 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행될 수 있는 법, 규정, 규칙, 명령 등의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p> <p>따라서, 현재로서는 이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기존 연방법, 규칙, 규정, 명령에 있어 변경해야 할 것이 없으며, 이 행정조치계획은 미국이 협정상 부담해야 할 새로운 국제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된다고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 법과 협정을 준수할 지속적인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시간이 경과하여 협정상의 경험이 축적함에 따라, 다른 행정조치가 협정 이행을 위한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취하여 질 수 있다.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입법 조치를 구하거나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위한 정상적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다.</p>

(b) 협정의 주법과의 관계

- (1) 법적 이의제기 - 주법의 어떠한 규정이나 적용은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인이나 상황에 대해 주법이나 그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될 수 없다. 단, 그러한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할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2) 주법의 정의 - 이 항의 목적상, “주법”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주의 정치적 하위단체의 법, 그리고
- (B) 보험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주법.

한·미 FT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수준의 법과 규정과 주 및 지방의 법과 규정도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상당한 예외와 제약이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자, 그리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금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한·미 FTA는 비록 분쟁해결패널이 주의 조치가 협정에 불일치한다는 판정을 할 수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주법을 사전 무력화하거나 무효시키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 또는 비연방의 수준에서 협정의 규정에 합치할 방식을 동 협정하에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상 미국의 의무가 각 주들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연방-주간의 가능한 최대한 수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한다.

이행법안의 제102조(b)항(1)목은 주법 혹은 주법의 적용과 협정상에 해결되지 않는 충돌이 있는 경우에 미국만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조항에서 미국에 부여된 권한은 만일 협의를 통해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써만 사용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c) 사적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력 -
미국 이외의 어떠한 인도

- (1) 협정에 따라 또는 이에 대한 의회 승인에 의하여 소송 또는 항변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또는
- (2) 미국,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단체의 부, 기관 또는 그 밖의 대행기관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협정과 불합치 한다는 것을 이유로 법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행법안 제102조(c)항은 사인이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사인에 대하여 소송 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배제한다. 그러므로 사인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사인에 대하여 협정의 합치성 또는 불합치성을 이유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규정은 정부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다른 법규정상의 일반 “공익적” 권한 또는 재량적 권한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방 또는 주의 조치를 요구, 배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개인의 소권을 배제한다.

주에 대하여, 제102조(c)항은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주의 합치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은 사적 소송이 아니라는 의회와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성격의 소송은 행정부의 무역과 외교관계의 수행, 그리고 한·미 FTA 협정상의 적절한 분쟁 해결을 저촉할 수 있다.

제102조(c)항은 개인이 협정 11조(투자)상의 미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나 그러한 중재를 통해 미국에 대해 불리한 판정을 집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또한 어떠한 정부기관이, 기관 자신의 조치나 제안한 조치가 협정문과 일치한다고 고려하거나 또는 그러한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끝/